

정보공개 청구서

※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(대리인)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청구인	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성별) ()
	여권·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작성)	사업자(법인·단체)등록번호
	주소(소재지)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
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
청구 내용		
공개 방법	[]열람·시청 []사본·출력물 []전자파일 []복제·인화물 []기타()	
수령 방법	[]직접 방문 []우편 []팩스 전송 []정보통신망 []전자우편 등()	
수수료	[]감면 대상임 []감면 대상 아님	
	감면 사유 ※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7 조제 3 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시기 바랍니다.	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(접수 기관의 장) 귀하		

접 수 증

접수번호	청구인 성명
접수부서	접수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.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장 직인	
유의 사항	
-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3 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1 조 제 3 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 3 자에게 통지됩니다. -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8 조부터 제 20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,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 : www.simpan.go.kr)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-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 1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공공기 관에서 청구인의 주민 등록번호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	